

#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5
----------	------

제출년월일 : 2013. 6.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 2013. 1. 1.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포상금 지급 조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급 대상(안 제2조)
- 나. 지급 기준(안 제3조)
  -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 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4조)
  - 부시장(위원장), 기획행정국장(부위원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 라. 포상금 지급 신청 (안 제5조)
- 마. 포상금 지급 방법 (안 제6조)
- 바. 포상금 환수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 4. 19 ~ 5. 9) 결과 : 접수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 행위의 고발
  - 다.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액 특별 징수 계획 등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 법 제68조의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이바지 한 자
-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나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 촉탁하여 징수한 자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에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증명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처분이나 공무원 징계 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포상금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제7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당 과 장 확 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체납 경과 연수 표시									

[별지 제2호서식]

##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제7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 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금	지급일	당 과 화 인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루, 부당 환급 · 감면 세액 추징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					
징수 촉탁에 따른 세입 증대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 등 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	세정 발전				
	세입 증대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불임 : 증명 자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충주시장 귀하					

## [참고자료] < 주요 개정 내용 >

### 제목 :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2013. 1. 1.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포상금의 지급 조항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li> <li>• 미등기 전매 빌굴 취득세 부과</li> <li>• 1년이상 지난 세원빌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려지거나 숨은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li> <li>• 미등기 전매 빌굴 취득세 부과</li> <li>• 1년이상 지난 세원빌굴</li> <li>• 그 밖의 숨은 세원 빌굴</li> </ul>
제2조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li> </ul> <p><b>※ 특별공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강제징수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공적이 있다고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별공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기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li> <li>• 세외수입 삭제</li> <li>•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소멸시효전에 징수하게 한 자</li> <li>• 지속적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 한 자</li> <li>•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 고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번호판영지 기타 체납처분 업무</li> <li>-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 수행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기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li> </ul>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3조 지급 기준	- 미등기 전매 발굴 : 징수액의 10%	- 변동없음
	- 1년이상 지난 세원발굴 : 징수액의 5%	- 변동없음
	- 체납액 징수 •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 •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3% • 3년차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5%	- 변동없음
	-	- (추가) 결손된 체납액을 소멸시효 전에 징수 : 징수액의 5%
	-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 : 징수액의 5%	- 삭제
	- 징수촉탁 : 징수촉탁교부금의 10%	- 변동없음
지급 한도	- 창의적 제안등에 의한 세입증대 기여 등 특별공적 :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 건당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내 -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이내	- 삭제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조 포상 금심 의위 원회	- 충주시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	- 7명 구성 : 부시장(위원장), 기획행정국장(부위원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 노력,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4]